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 비 1.1% 증가

○ 2012년 11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광공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9.0%), 비금속광물(-9.3%), 금속가공(-4.2%)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4.7%), 화학제품(2.7%), 의약품(9.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전월대비 2.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2.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 도소매업(1.5%), 운수업(3.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전월대비 0.8% 증가)함.

○ 2012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투자는 9.3%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7.3%), 승용차 등 내구재(6.0%),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8%)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전월대비 2.3%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기타기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9.3% 감소(전월대비 0.3%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신규주택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공장, 통신, 도로, 재건축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함.

- 11월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함.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지난달(1.6%)에 이어 1%대 시현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4.1%)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0%), 주택·수도·전기·연료(3.6%),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8%), 주류 및 담배(1.8%), 교육(1.7%), 교통(1.4%)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p	3/4p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5.7	3.8	1.5	0.4	2.9(2.3)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6.3	4.2	1.5	0.3	2.9(2.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5	3.3	1.5	0.4	1.5(1.3)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5	0.3	-1.3	-1.5	-0.6(0.5)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8.0	6.7	4.9	2.3	3.8(2.1)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0	2.5	1.7	1.6	2.0(0.8)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1.2	2.0	1.0	1.7	3.9(2.3)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2.8	9.4	-0.4	-7.1	-9.3(-0.3)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4.0	3.0	2.4	1.6	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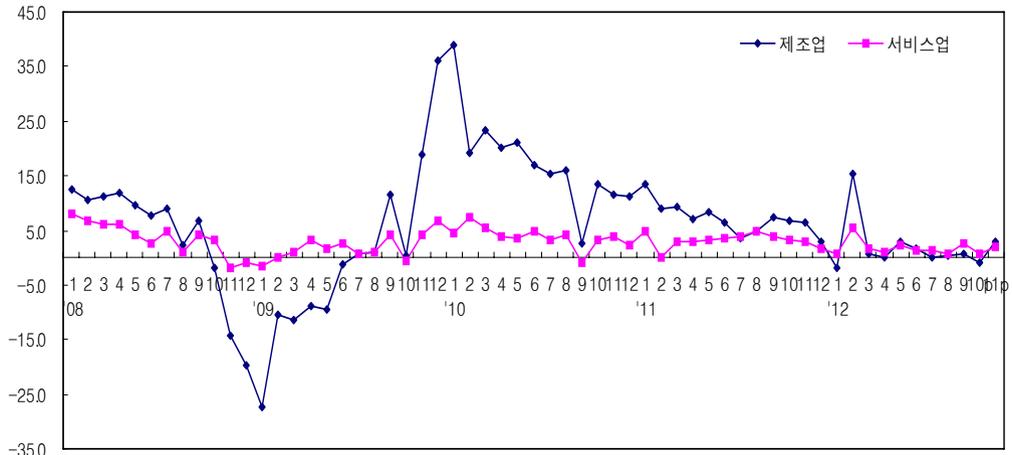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1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12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1.6%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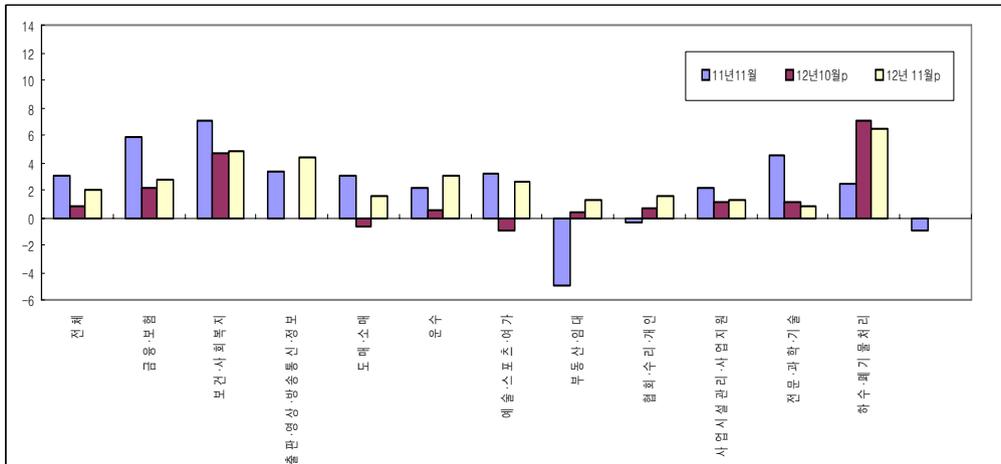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12), 『201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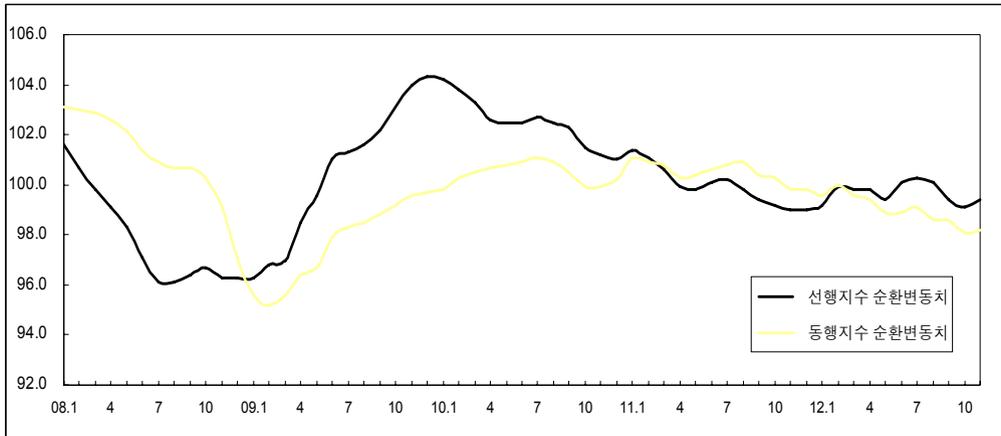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05 = 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둔화

- 2012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6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4천 명(1.3%) 증가함.
 -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962천 명으로 155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90천 명으로 179천 명(1.7%) 증가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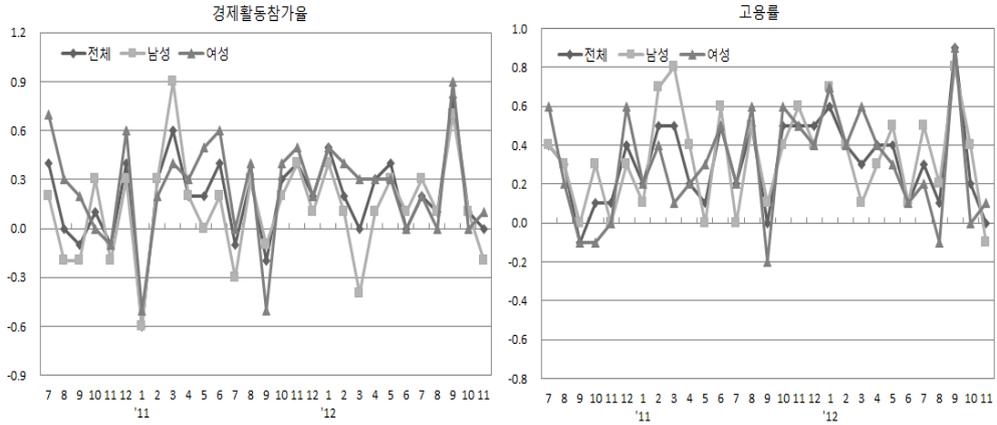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202 (1.6)	25,318 (1.9)	24,873 (1.6)	25,844 (1.6)	25,760 (1.9)	25,787 (1.5)	25,652 (1.3)
참가율	59.9	62.0	61.5	61.1	61.4	60.1	62.3	61.8	61.8	61.4
취업자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589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5,069 (1.6)	24,941 (1.4)
고용률	57.4	59.9	59.5	59.4	59.7	57.8	60.2	60.0	60.1	59.7
실업자	1,028	865	786	740	730	947	841	770	718	710
실업률	3.9	3.4	3.1	2.9	2.9	3.8	3.3	3.0	2.8	2.8
비경제활동인구	16,392 (0.8)	15,559 (0.4)	15,847 (1.2)	16,014 (0.3)	15,889 (-0.1)	16,495 (0.6)	15,669 (0.7)	15,904 (0.4)	15,943 (1.2)	16,123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 12), 『2012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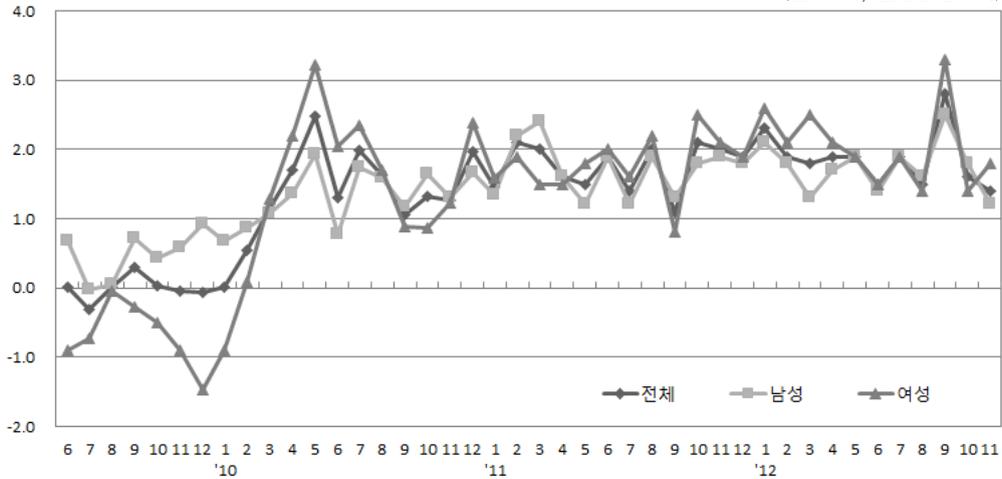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3.3%)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50.0%)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2년 11월 중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2년 11월 중 취업자는 24,9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3천 명(1.4%)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9천 명(1.2%)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 명(1.8%)이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2년 11월 중 실업자는 7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2.6%)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4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3.0%)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2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2.0%)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은 2.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12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4천 명(1.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7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천 명(1.2%)이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천 명(-6.9%) 감소함.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404천 명으로 42천 명(1.0%)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64천 명, 3.9%), 농림어업(25천 명,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4천 명, 1.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8천 명, 1.4%)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21천 명, -0.7%), 건설업(35천 명, -1.9%)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589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5,069 (1.6)	24,941 (1.4)
농림어업	1,207 (-2.3)	1,736 (0.2)	1,704 (-2.9)	1,521 (-1.5)	1,598 (-0.7)	1,176 (-2.6)	1,713 (-1.4)	1,706 (0.1)	1,738 (-1.1)	1,622 (1.5)
제조업	4,139 (5.8)	4,127 (2.8)	4,041 (-0.3)	4,056 (-1.8)	4,054 (-2.1)	4,037 (-2.5)	4,061 (-1.6)	4,126 (2.1)	4,188 (3.6)	4,218 (3.9)
건설업	1,641 (-0.2)	1,774 (-2.3)	1,755 (-2.0)	1,832 (4.0)	1,842 (3.7)	1,721 (4.8)	1,807 (1.9)	1,772 (0.9)	1,818 (-0.1)	1,808 (-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96 (1.0)	5,542 (1.8)	5,544 (1.8)	5,571 (1.8)	5,596 (2.6)	5,610 (2.1)	5,592 (1.4)	5,622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097 (3.0)	8,529 (2.8)	8,473 (2.8)	8,486 (3.1)	8,521 (3.1)	8,398 (3.7)	8,820 (3.4)	8,772 (3.5)	8,718 (2.3)	8,666 (1.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1.6)	2,933 (3.6)	3,001 (6.6)	3,011 (5.5)	3,014 (5.7)	3,011 (4.5)	2,991 (2.0)	2,990 (-0.4)	3,000 (0.0)	2,993 (-0.7)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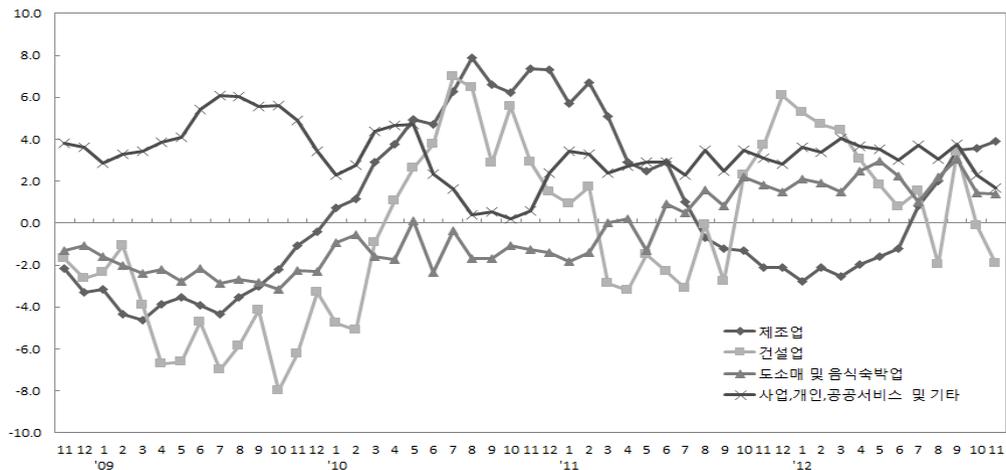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12), 『2012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 증가폭 둔화**

- 2012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00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1천 명(0.9%)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9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2천 명(1.7%)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281천 명으로 443천 명(4.1%)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60천 명으로 87천 명(-1.7%), 일용근로자는 1,700천 명으로 64천 명(-3.6%) 감소함.
 - 자영업자는 5,704천 명으로 38천 명(0.7%) 증가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1,297천 명으로 23천 명(1.8%) 증가함.
- 2012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 명(-2.9%)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446천 명으로 455천 명(2.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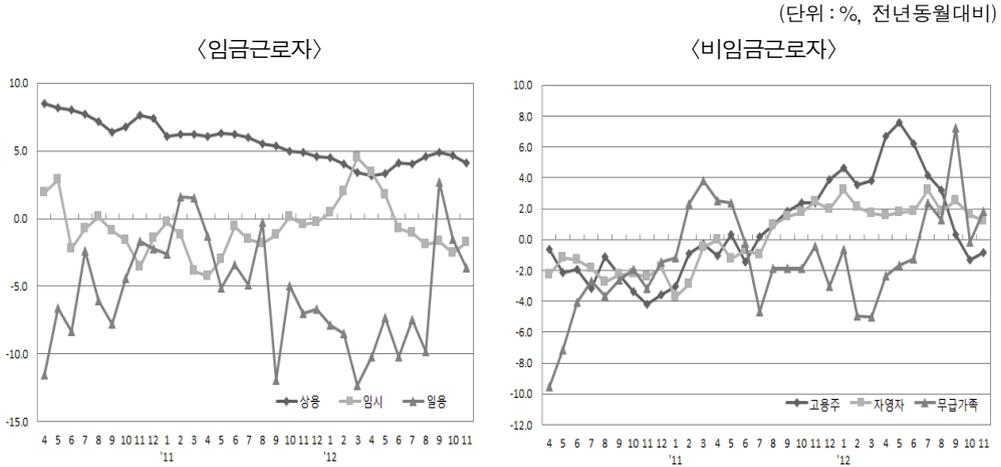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589 (2.0)	23,927 (2.0)	25,003 (1.8)	24,989 (2.1)	25,069 (1.6)	24,941 (1.4)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6,965 (-0.4)	6,878 (1.5)	6,939 (1.9)	6,650 (1.6)	7,154 (2.1)	7,154 (2.7)	7,111 (0.6)	7,000 (0.9)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80 (0.6)	5,639 (2.3)	5,666 (2.4)	5,548 (2.8)	5,830 (3.1)	5,823 (2.5)	5,779 (0.8)	5,704 (0.7)
무급가족종사자	1,143 (1.7)	1,348 (1.5)	1,285 (-4.7)	1,239 (-2.0)	1,273 (-0.4)	1,102 (-3.6)	1,324 (-1.8)	1,331 (3.6)	1,332 (-0.1)	1,297 (1.8)
임금근로자	16,917 (3.2)	17,568 (2.5)	17,518 (2.3)	17,585 (2.2)	17,650 (2.0)	17,277 (2.1)	17,849 (1.6)	17,836 (1.8)	17,958 (2.0)	17,941 (1.7)
상용근로자	10,413 (6.2)	10,681 (6.2)	10,731 (5.6)	10,820 (4.8)	10,838 (4.9)	10,825 (4.0)	11,059 (3.5)	11,216 (4.5)	11,302 (4.7)	11,281 (4.1)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072 (-1.5)	5,042 (-0.2)	5,047 (-0.4)	4,914 (2.3)	5,114 (1.4)	4,992 (-1.6)	4,964 (-2.5)	4,960 (-1.7)
일용근로자	1,701 (0.1)	1,846 (-3.3)	1,716 (-5.7)	1,723 (-6.3)	1,765 (-7.0)	1,538 (-9.6)	1,675 (-9.3)	1,627 (-5.2)	1,692 (-1.5)	1,700 (-3.6)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0.4)	8,464 (154.2)	3,217 (4.1)	3,288 (5.3)	3,313 (2.1)	3,284 (2.3)	4,722 (-44.2)	3,137 (0.7)	3,192 (-2.9)
36시간 이상	19,739 (11.7)	21,067 (1.7)	15,419 (-24.3)	20,937 (1.5)	20,991 (1.3)	20,081 (1.7)	21,425 (1.7)	19,770 (28.2)	21,630 (1.8)	21,446 (2.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12), 『2012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대졸 이상 실업률 증가**

○ 2012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6.7%, -0.1%p), 30대(2.8%, -0.1%p), 60세 이상(1.5%, -0.3%p)에서 하락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1,028(4.2)	865(3.4)	786(3.1)	740(2.9)	730(2.9)	947(3.8)	841(3.3)	770(3.0)	718(2.8)	710(2.8)
15~29세	372(8.8)	332(7.9)	284(6.7)	292(7.1)	279(6.8)	346(8.2)	341(8.1)	283(6.8)	276(6.9)	271(6.7)
30~39세	237(4.0)	211(3.5)	189(3.2)	171(2.9)	172(2.9)	190(3.2)	188(3.2)	166(2.8)	161(2.7)	166(2.8)
40~49세	167(2.5)	145(2.1)	138(2.0)	131(1.9)	132(1.9)	164(2.4)	135(2.0)	133(2.0)	123(1.8)	126(1.9)
50~59세	133(2.7)	107(2.0)	108(2.1)	94(1.8)	91(1.7)	124(2.3)	112(2.0)	123(2.2)	106(1.9)	100(1.8)
60세 이상	119(4.5)	70(2.3)	67(2.1)	53(1.8)	56(1.8)	124(4.4)	66(2.0)	65(1.9)	52(1.5)	48(1.5)
중졸 이하	195(4.1)	112(2.1)	119(2.3)	108(2.1)	106(2.1)	187(4.0)	112(2.2)	106(2.1)	92(1.8)	94(1.9)
고졸	465(4.6)	408(4.0)	372(3.7)	349(3.5)	343(3.4)	408(4.1)	356(3.5)	350(3.4)	304(3.0)	314(3.1)
대졸 이상	369(3.8)	345(3.4)	296(2.9)	284(2.8)	280(2.7)	352(3.4)	373(3.5)	314(3.0)	321(3.1)	302(2.9)
취업무경험 실업자	52	45	45	44	40	58	48	36	39	34
취업유경험 실업자	977	820	741	696	689	889	793	734	679	67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 12), 『2012년 11월 고용동향』.

- 40대(1.9%, 0.0%p), 50대(1.8%, 0.1%p)에서는 상승함.
 - 학력별 실업률은 대졸 이상(0.2%p)에서 상승하였고, 중졸 이하(-0.2%p), 고졸 (-0.3%p)에서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음.
- 2012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71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677천 명으로 12천 명 감소하였음.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9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1.0% 상승

- 2012년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05천 원으로 전년동월(2,978천 원)대비 11.0% 상승함.
 - 2012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특별급여의 증가 영향으로 2011년 9월 대비 11.4% 상승한 3,535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해 2,47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9% 하락하여 177천 원을 기록한 반면, 특별급여 증가율은 37.8% 상승하여 879천 원을 기록함.
 - 완성차 제조 및 관련 산업에서 특별급여인 상여금 지급을 2011년에는 8월에 하였으나 2012년에는 9월로 변경되어 지급한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1,24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9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3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819천 원)대비 5.8%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9월 누계 대비 5.7% 상승한 3,162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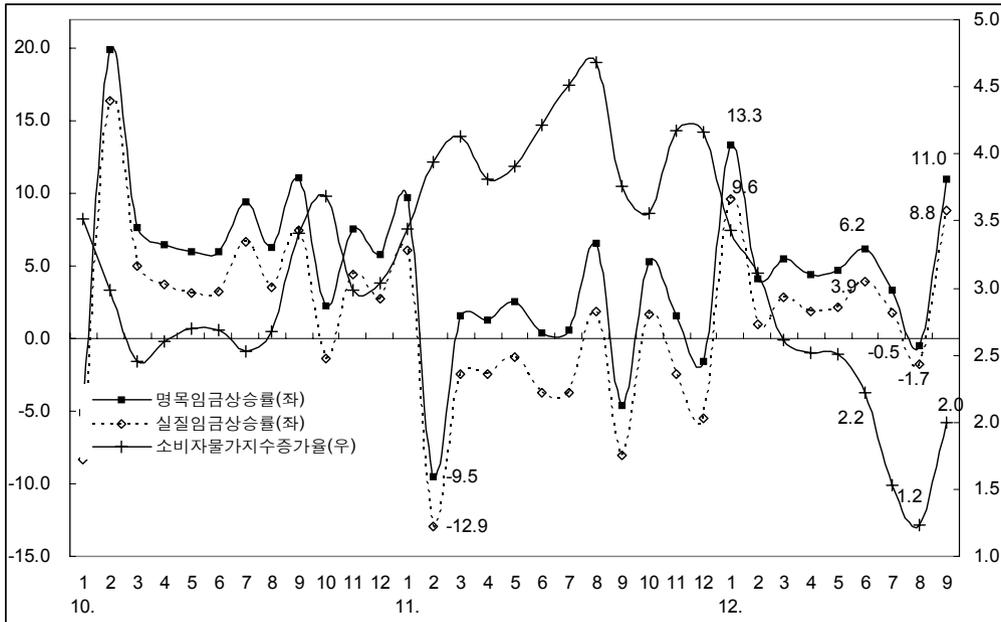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9월 누계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819 (0.8)	2,978 (-4.5)	2,983 (5.8)	3,305 (11.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90 (-1.2)	3,174 (-6.1)	3,535 (11.4)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23 (4.5)	2,352 (5.0)	2,479 (5.4)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8 (-7.6)	184 (-6.5)	180 (1.2)	177 (-3.9)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89 (-19.9)	638 (-32.3)	527 (7.8)	879 (37.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93 (12.6)	1,216 (17.8)	1,280 (7.3)	1,247 (2.6)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7 (4.0)	104.9 (3.8)	106.1 (2.3)	107.0 (2.0)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3.1	-8.0	6.4	8.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9월 누계 대비 5.7%, 초과급여는 1.2%, 특별급여는 7.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9월 누계 대비 7.3% 상승한 1,280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9월 실질임금은 8.8% 상승함.

- 2012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8.8%를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2년 1~9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6.4%임.

◆ 2012년 9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제외)

○ 2012년 9월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9월 누계	9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819 (0.8)	2,978 (-4.5)	2,983 (5.8)	3,305 (11.0)
광업	3,000 (7.3)	3,309 (10.3)	3,309 (10.3)	3,603 (20.3)	3,535 (6.8)	3,924 (8.9)
제조업	2,985 (9.1)	3,034 (1.6)	2,993 (1.6)	3,130 (-9.3)	3,203 (7.0)	3,650 (16.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296 (0.0)	7,551 (4.1)	5,271 (-0.5)	7,362 (-2.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450 (1.2)	2,617 (-5.7)	2,612 (6.6)	2,944 (12.5)
건설업	1,944 (7.9)	2,181 (12.2)	2,186 (12.9)	2,327 (7.5)	2,270 (3.8)	2,413 (3.7)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86 (5.1)	3,105 (0.0)	3,089 (7.0)	3,539 (14.0)
운수업	2,381 (5.4)	2,393 (0.5)	2,364 (-0.4)	2,547 (-2.5)	2,569 (8.6)	2,788 (9.5)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 (13.0)	1,639 (13.1)	1,769 (14.5)	1,740 (6.1)	1,849 (4.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674 (9.3)	3,829 (5.3)	3,850 (4.8)	4,111 (7.4)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4,798 (1.8)	5,128 (2.9)	4,994 (4.1)	5,233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2,003 (1.7)	2,125 (4.6)	2,184 (9.0)	2,200 (3.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 (-2.2)	3,811 (-2.4)	4,094 (0.7)	4,049 (6.2)	4,770 (16.5)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 (-8.0)	1,682 (-8.2)	1,737 (-10.5)	1,772 (5.3)	1,891 (8.9)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 (-5.4)	3,039 (-5.7)	3,057 (-8.7)	3,190 (5.0)	3,317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 (-4.0)	2,452 (-5.0)	2,595 (-8.0)	2,602 (6.1)	2,783 (7.2)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094 (1.7)	2,196 (1.7)	2,180 (4.1)	2,391 (8.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80 (3.5)	2,250 (-5.2)	2,222 (2.0)	2,432 (8.1)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9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제조업(16.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5%), 도매 및 소매업(14.0%), 운수업(9.5%)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반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5%)임.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9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9월 누계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0%), 운수업(8.6%), 제조업(7.0%), 도매 및 소매업(7.0%) 등에서 두드러짐.

◆ 2012년 9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9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9월 기준 3,06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별급여(30.3%)와 정액급여(5.6%)의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9월 상용임금총액은 5,236천 원으로 2011년 9월 대비 18.0%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별급여(50.5%)와 정액급여(5.6%) 상승의 영향임.
 - 반면, 초과급여는 전 규모에서 감소했는데 5~299인 규모의 초과급여는 0.7%, 300인 이상 규모는 8.2% 감소함.
- 2012년 1~9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3%)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3.9%)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4.0%)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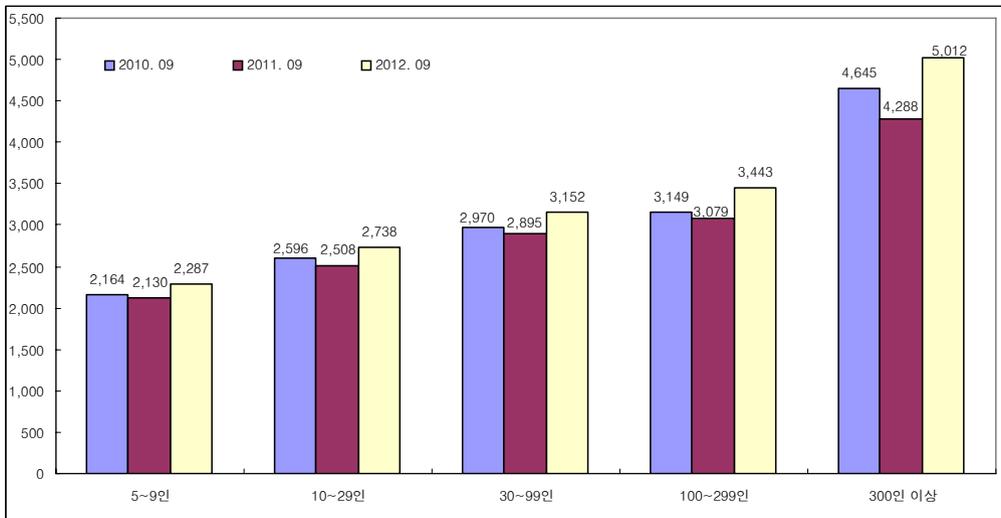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9월 누계		1~9월 누계	
				9월		9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990 (-1.2)	3,174 (-6.1)	3,162 (5.7)	3,535(11.4)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323 (4.5)	2,352 (5.0)	2,455 (5.7)	2,479 (5.4)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78 (-7.6)	184 (-6.5)	180 (1.2)	177 (-3.9)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89 (-19.9)	638 (-32.3)	527 (7.8)	879 (37.8)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193 (12.6)	1,216 (17.8)	1,280 (7.3)	1,247 (2.6)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652 (-1.1)	2,811 (-5.4)	2,818 (6.3)	3,069 (9.2)
	정액급여	2,082 (4.3)	2,204 (5.9)	2,188 (5.6)	2,216 (6.0)	2,321 (6.1)	2,341 (5.6)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49 (-13.9)	153 (-12.7)	154 (3.6)	152 (-0.7)
	특별급여	441 (8.4)	321 (-27.3)	315 (-27.9)	443 (-37.3)	343 (9.0)	577 (30.3)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14.8)	1,191 (12.4)	1,223 (17.8)	1,286 (8.0)	1,263 (3.3)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245 (-0.2)	4,436 (-8.4)	4,409 (3.9)	5,236 (18.0)
	정액급여	2,779 (5.2)	2,842 (2.3)	2,826 (2.4)	2,826 (1.9)	2,940 (4.1)	2,985 (5.6)
	초과급여	268 (9.6)	286 (6.7)	284 (8.9)	294 (6.1)	272 (-4.0)	270 (-8.2)
	특별급여	1,245 (18.7)	1,146 (-8.0)	1,136 (-7.9)	1,316 (-26.5)	1,196 (5.3)	1,982 (50.5)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17.8)	1,220 (14.8)	1,155 (17.7)	1,212 (-0.6)	1,125 (-2.6)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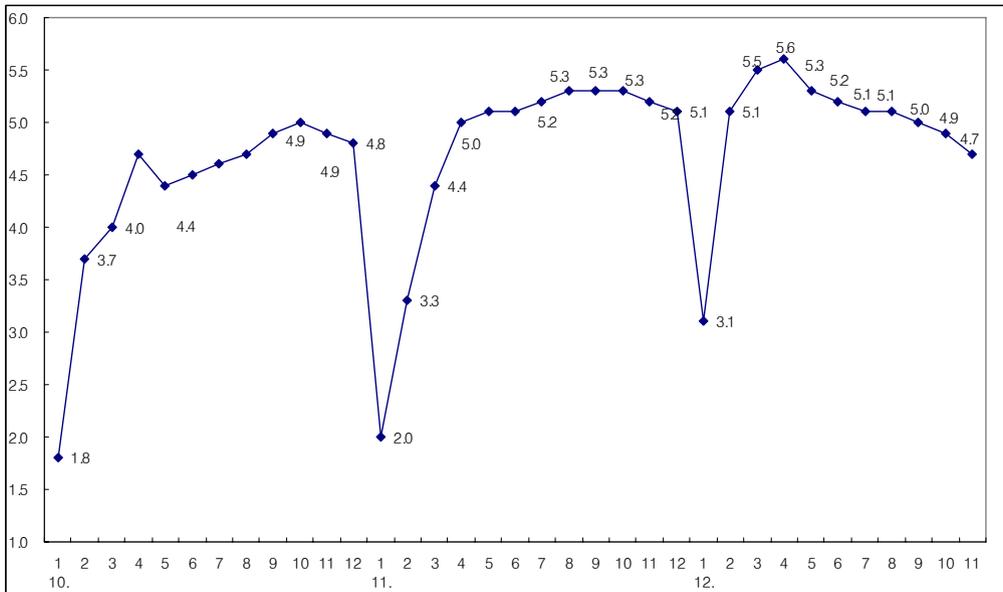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4.7%

- 2012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2011년 11월 인상률(5.2%)에 비해 0.5%p 하락
 - 2012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0%로 2011년 9월 인상률(5.3%)에 비해 0.3%p 하락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9월 근로시간 0.6% 감소

- 2012년 9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함.
 - 2012년 9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69.9시간)에 비해 1.1시간(0.6%) 감소함(표 9 참조).
- 2012년 1~9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2년 1~9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5.0시간)에 비해 0.6시간(-0.3%)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9월
전체근로시간	176.7(0.3)	176.3(-0.2)	175.0(0.3)	169.9(4.7)	174.4(-0.3)	168.8(-0.6)
상용총근로시간	184.7(0.2)	182.1(-1.4)	180.6(-0.9)	175.7(3.8)	179.9(-0.4)	174.6(-0.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0.1)	167.1(0.7)	161.9(5.7)	167.2(0.1)	162.6(0.4)
상용초과근로시간	16.4(8.6)	13.6(-17.1)	13.5(-17.2)	13.8(-14.8)	12.8(-5.2)	12.0(-13.0)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6.2)	122.1(5.3)	117.9(10.7)	121.5(-0.5)	116.8(-0.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9월 운수업,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9월 운수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9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2012년 9월 건설업(146.0시간, -1.6%), 운수업(176.3시간,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187.0시간, -1.1%)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5.8,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9.9시간, 2.1%), 도매 및 소매업(169.9시간, 0.5%)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9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87.0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5.3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9월 누계 근로시간은 제조업, 건설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9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186.3시간, -1.6%), 건설업(151.4시간, -1.5%)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사업서비스업(173.4시간, 2.2%), 운수업(181.9시간,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8시간, 1.8%)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9월 누계	9월
			1~9월 누계	9월		
전 산업	176.7(0.3)	176.3(-0.2)	175.0(0.3)	169.9(4.7)	174.4(-0.3)	168.8(-0.6)
광업	188.1(0.3)	186.9(-0.6)	185.9(0.3)	180.2(5.6)	186.0(0.1)	181.3(0.6)
제조업	192.1(1.9)	190.6(-0.8)	189.3(0.0)	182.6(4.2)	186.3(-1.6)	181.3(-0.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5.6(0.1)	171.9(1.2)	175.6(0.0)	169.3(-1.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5.0(-3.1)	178.8(-0.3)	184.9(-0.1)	178.8(0.0)
건설업	146.1(-0.7)	153.9(5.3)	153.7(5.9)	148.4(10.3)	151.4(-1.5)	146.0(-1.6)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3.7(-0.9)	169.0(3.6)	174.3(0.3)	169.9(0.5)
운수업	184.6(0.1)	181.6(-1.6)	179.9(-1.9)	179.8(1.5)	181.9(1.1)	176.3(-1.9)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5.8(14.8)	179.7(16.0)	187.7(1.0)	180.4(0.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3.3(-0.3)	159.3(7.4)	164.2(0.6)	159.0(-0.2)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2.0(-0.6)	159.2(6.1)	163.5(0.9)	158.5(-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5(-3.2)	189.1(-1.3)	194.1(0.8)	187.0(-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4.4(0.4)	160.3(7.6)	165.5(0.7)	159.9(-0.2)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69.7(-4.3)	169.4(1.4)	173.4(2.2)	168.3(-0.6)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51.9(3.1)	146.9(10.0)	152.1(0.1)	145.3(-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71.7(-1.4)	166.4(2.8)	174.8(1.8)	169.9(2.1)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6.3(-0.5)	148.7(3.7)	157.8(1.0)	155.8(4.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3.4(0.3)	163.3(1.1)	169.5(-2.2)	164.4(0.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9월 3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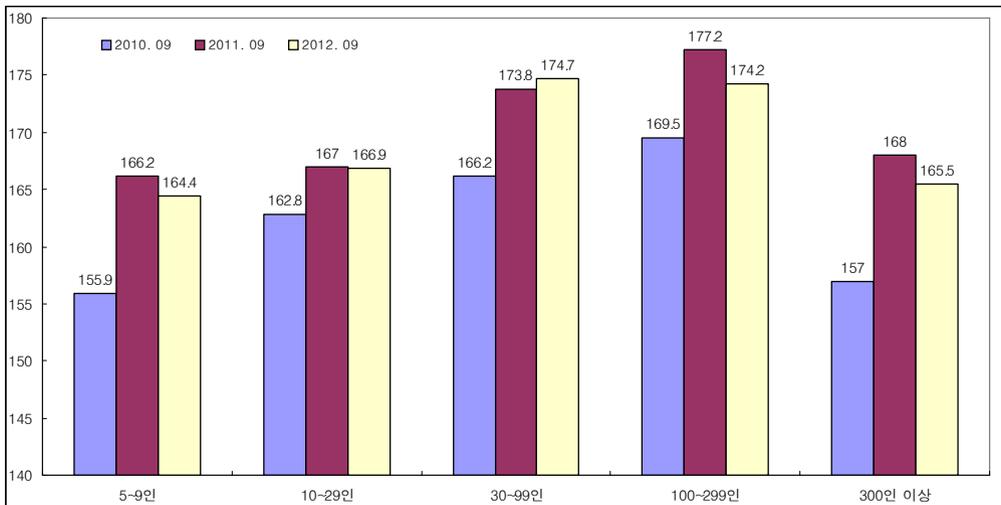
○ 2012년 9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3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4.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함(그림 11 참조).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 한편 2012년 1~9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5~9인, 10~2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0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8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0%,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6%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4% 증가하였고,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8시간으로 2011년 1~9월 누계와 동일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 여야는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함.
 -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
-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전함.
 - 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일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택시업계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힘.
- 하지만 버스업계와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매우 유감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 또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택시산업종합대책을 통한 대체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며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 현대자동차 노사,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12월 14일, 21일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 6대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함.
 - 이에 회사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력 투입을 막으려는 비정규직 노조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알려짐.
-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12월 13일 특별협약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2016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이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2015년 말까지 3,000명 정규직화를 제안한 것에 비해 신규채용규모를 500명 늘린 규모임. 또한 2010년 1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사내하청 해고자 114명 가운데 100명을 해당 업체에 재입사시킨다는 안을 제시함.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신규채용 방침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법적근거가 확실히 마련될 때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신규 채용하는 사내하청 규모는 무의미하다”며 회사 측의 제안을 거부함. 이들은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임.
- 12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14일 교섭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짐.
 - 회사 측은 “정년퇴직 등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채용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교섭 때문에 미뤄 왔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함.
 - 이에 노조 측은 “교섭 중에 신규채용을 강행한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규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규직 노조가 27일 특별교섭에 앞서 “회사가 안을 내놓으면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단하겠다”고 밝히자,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장을 봉쇄하면서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 형태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동의 없는 잠정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함.
 - 이에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봉쇄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노조는 연내 불법과건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고 2013년에 시행될 주간연속 2교대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완성에 주력하고자 했으나 교섭장 봉쇄와 교섭 무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밝힘.

-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철탑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에 하루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및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권 행사와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감전, 추락,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사내하청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출입제한과 불법 시설물 철거를 명령함.
 - 이러한 판결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철탑에까지 올라가 절규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농성을 압박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함.

◆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

- 금속노조는 12월 17일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3년 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함.
 - 이번 결의는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민주노조 기획탄압과 노조파괴 등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것임.
 - 금속노조 관계자는 1월 총파업을 위해 20일 1차 잔업거부, 2013년 1월 초·중순 2차 잔업거부를 할 계획이고 총파업 일정은 향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20일 1차 잔업거부에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여하고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조는 불참했음.

◆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2월 26일 ‘학교 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 책정, 대량해고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봉예산 808억 증액에 동의할 것,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원관리 대상에 학교에 근무하는 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와 11개 교육감들은 노조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함.
 - 또한 이들은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 800여억 원 삭감 결정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에 호봉인상률을 적용하는 예산 800여억 원을 삭감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며 재파업의 가능성을 밝힘.
 - 이에 앞서 14일에는 전북을 비롯한 일부 학교들이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함.
-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는 근로자가 소속된 학교장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라고 판결함.
-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 아니라 궁극적인 권리·의무·책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판시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함.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당장 단체교섭 당사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서울메트로 노사, 단체협상 타결

- 서울메트로 노사는 12월 10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함.
- 노사 양측은 내년부터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연계해 시행하기로 합의함. 또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산하기관 노사정협의회인 서울모텔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그간 노조 측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 측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긍정정인 입장을 표명함.
 -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 노사 양측이 공감했다”며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전함.
 - 노조 측도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행한다’고 명시해 진일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부분은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꼭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타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서울메트로 입장에서는 적자가 지속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앞으로 좋은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KDB산업은행,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 KDB산업은행은 12월 30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31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현재 370여명인 무기계약직 직원을 2013년 초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규상 고용형태도 정규직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전함.
 - 이에 노조 측은 “3월경에는 사규 개정을 마치고 정규직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직군 일원화가 된 만큼 직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임.
 -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고용형태에 대한 위화감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하나은행은 12월 85명의 계약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IBK기업은행은 2013년 1월 2일 일반 계약직 사원 1,1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아지면 향후 종합적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한 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회적 의무”라며 “전환 비용은 예산 조정 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 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 서울시는 12월 5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함.

-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명을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분야 4,172명(67%)과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간접고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이 중 2013년 청소분야, 2014년 시설·경비분야, 2015년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해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 이 외에도 서울시는 본청·사업소 소속 159명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77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6명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함.
- 하지만 한 관련 전문가는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간접고용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함.
- 다산콜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위탁한 간접고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함.
 -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분야는 2013년에 전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1월 21일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제도의 요건을 정비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행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준 연령은 56세 또는 57세로 기업의 평균 정년수준인 58.4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원금 지급 기준연령을 58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현행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요건을 정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시점을 현행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년 반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개편 등에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제도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을 활성화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 노동위원회 분쟁해결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서 관계 당사자가 함께 신청할 때에는 알선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원들은 직무수행으로 획득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정받은 사건에 대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등 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 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함. 또한 단독심판 요건을 강화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노동분쟁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